



제 438회 국회 (임시회)
제 2 차 국 방 위 원 회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예비군대원 불이익 처우 금지 주체에 ‘인사관리 담당자’ 추가〉
■ 이만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244호)

2026. 8.

국 방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문 성 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만희의원 등 11인

나. 발의연월일 : 2026. 6. 15.

다. 회부연월일 : 2026. 7.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가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예비군대원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실질적으로 직장의 인사관리 담당자에 의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인사관리 담당자에 대해서도 예비군 동원·훈련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 금지를 명문화하고 위반시 제재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사관리 담당자로 하여금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15조의2제1항).

Ⅲ. 검토의견

- 현행은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가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위반시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불리한 처우 금지 의무 주체에 ‘인사관리 담당자’를 추가하고 이에 대한 위반시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u>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u>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직장 보장) ----- <u>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u> 및 사용자를 위하여 인사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인사관리 담당자”라 한다)은 사용자----- -----.
제15조(벌칙) ① ~ ⑦ (생략)	제15조(벌칙)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⑧ ----- ----- ----- ----- <u>사</u>

<u>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u> 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⑨ ~ ⑫ (생 략) 제15조의2(과태료) ① <u>제10조의2</u>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 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u>교직원</u>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③ (생 략)	<u>용자</u>----- ----- ----- -----. ⑨ ~ ⑫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과태료) ① <u>제10조 및 제 10조의2</u>----- ----- ----- -----<u>인사관리 담당자 또는 교직원</u>-----. ② . ③ (현행과 같음)
---	--

☐ 현행법 제10조¹⁾에서는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현행법 제15조제8항²⁾에서는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 1)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예비군법」 제15조(벌칙) ⑧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 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현행법에 따른 경우, 예비군대원에 대한 불리한 처우시 사용자에게 대해서만 의무위반을 묻고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인사관리 담당자가 불이익한 처우를 실행 하더라도 인사관리 담당자에게 직접 의무위반을 묻기 어려운 상황임.
 - 이에 개정안은 예비군대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도록 한 의무 주체로 현재의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사용자)에 더하여 인사관리 담당자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예비군대원의 직장에서의 권리보호가 보다 실효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의 타당성이 인정됨.
 - 또한 현행법 제10조의2 및 제15조의2제1항3)에 따라 학생신분의 예비군대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의무 주체 및 벌칙(과태료) 대상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바, 직장에 재직 중인 예비군대원에 대해서도 이와 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인사관리 담당자는 실제 인사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권을

3) 「예비군법」 제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 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제15조(벌칙) ⑧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게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 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조의2(과태료) ①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게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교직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보유하지 않은 채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권한과 책임의 균형 측면에서 의무 주체를 확대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둘째, 최근 예비군대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이유로 현행법 제15조제8항에 따른 벌칙이 부과된 사례가 최근 없던 점을 고려⁴⁾할 때, 현행 규율만으로는 예비군대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는지, 이에 따라 의무 주체를 인사관리 담당자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참고로, 개정안에서는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를 ‘사용자’로 약어로 개정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현행법 제10조의4제3항 및 제5항에서도 약어인 ‘사용자’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제10조의4(불이익처우의 시정) ① 제10조와 제10조의2에 따른 불리한 처우를 받은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방부장관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0조와 제10조의2에 따른 불리한 처우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거나 제1항에 따른 신고 접수 후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나 개인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10조, 제10조의2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나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에게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시정요구를 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하고 이행결과를 국방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0조, 제10조의2를 위반한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 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 국방부는 예비군 대원의 직장 보장을 실질적으로 강화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4) 국방부에 따르면 최근 10년 「예비군법」 제15조제8항에 따라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에 대한 벌칙을 부과한 사례는 없음.

문 의 처
02)6788-5308